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84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재섭 · 강승규 · 서천호
박수영 · 박충권 · 김기현
안철수 · 김상훈 · 김장겸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 상태임.

이로 인해 정치활동은 허용되면서도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동일 연령대가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정치적 권리의 범위와 내용 간에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15세 이상이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고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해당 연령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정치적 권리구조의 정합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

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권 확대가 민주적 책임성과 판단 능력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15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제161조제7항 및 제181조제1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정치·선거 교육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권자가 선거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8세”를 각각 “16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세”를 “16세”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6세 미만의 자

제161조제7항 중 “未成年者”를 “16세 미만의 자”로 한다.

제181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6세 미만의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 연령 하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제161조제7항 및 제1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4(정치·선거교육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권자가 선거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15조(선거권) ① <u>18세</u>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u>18세</u>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2. (생략) ② <u>18세</u>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제15조(선거권) ① <u>16세</u>----- ----- -----. -----<u>16세</u>-----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u>16세</u>-----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
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
다.

1. ~ 3.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
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 9. (생략)

② (생략)

第161條(投票參觀) ① ~ ⑥ (생
략)

⑦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

-----.

-----.

1. (현행과 같음)

2. 16세 미만의 자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61條(投票參觀)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

<u>未成年者</u>・第18條(選舉權이 없는 者)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投票參觀人이 될 수 없다. ⑧ ~ ⑭ (생 략) 제181조(개표참관) ① ~ ⑩ (생 략)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u>미성년자</u> 3.・4. (생 략) ⑫ (생 략)	<u>16세 미만의 자</u>----- ----- ----- ----- ----- -----.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181조(개표참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1. (현행과 같음) 2. <u>16세 미만의 자</u> 3.・4. (현행과 같음) ⑫ (현행과 같음)
---	--